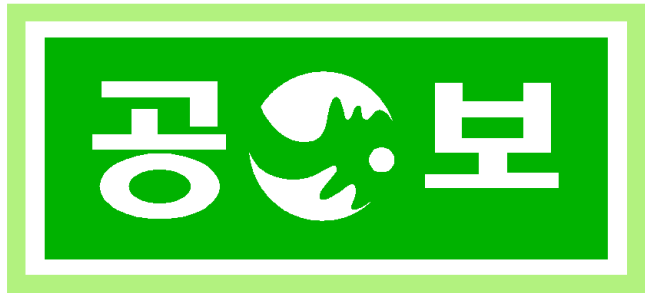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26 호 2013. 7. 8(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14호[2012 회계년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15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16호[도로명주소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1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620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

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3 - 114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규정에 의거 2013. 7.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 140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은 201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2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223,436,719,440	227,903,348,110	182,660,190,124	45,243,157,986	
일 반 회 계	218,171,378,440	222,472,631,018	181,549,331,244	40,923,299,774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5,265,341,000	5,430,717,092	1,110,858,880	4,319,858,212
	의료급여기금	169,555,000	174,180,160	148,877,090	25,303,070
	폐기물처리시설	3,803,598,000	3,803,751,787	0	3,803,751,787
	기 반 시 설	347,390,000	352,366,400	342,349,410	10,016,990
	주 차 창	935,219,000	1,090,790,695	612,388,610	478,402,085
	탄전소수변지역지원사업	9,579,000	9,628,050	7,243,770	2,384,280

○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계	50	37,874,255,270	12,682,380,760	23,797,756,120	1,394,118,390
명시이월	29	16,387,002,630	4,731,787,460	10,396,920,810	1,258,294,360
사고이월	3	2,441,938,000	1,059,994,530	1,246,119,440	135,824,030
계속비이월	18	19,045,314,640	6,890,598,770	12,154,715,870	0

○ 기금현황

(단위 : 원)

종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가	당해연도말 현재액
4종	1,461,154,420	410,412,075	1,871,566,495

○ 채권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735,414,078	192,387,542	164,129,570	1,763,672,050
인 반 회 계	1,476,085,880	33,448,000	25,492,000	1,484,041,880
기 타 특 별 회 계	46,100,660	4,297,120	39,036,720	11,361,060
기 금	213,227,538	154,642,422	99,600,850	268,269,110

○ 채무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가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406,242,150	△404,918,670	0	1,323,480
일 반 회 계	406,242,150	△404,918,670	0	1,323,4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해년도말현재액
		증 가	감 소	
계	520,454,789,674	19,409,607,708	3,844,207,993	536,020,189,389
행정재산	518,424,126,164	19,304,487,708	3,810,851,396	533,917,762,476
일반재산	2,030,663,510	105,120,000	33,356,597	2,102,426,913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보유현황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656	5,118,932,920	79	676,053,333	735	5,794,986,253
정수물품	656	5,118,932,920	79	676,053,333	735	5,794,986,253

○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불 용 액
계	5	1,229,018,000	564,778,020	564,778,020	1,211,180
일반회계	5	1,229,018,000	564,778,020	564,778,020	1,211,1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552,041,030,805	수 익	188,316,756,429
부 채	6,340,704,134	비 용	161,597,030,156
순자산	545,700,326,671	재정운영결과	26,719,726,273

※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과(T.241-7305, FAX241-7309)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 11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협의·승인)	점용목적	비고
		주소	성명					
2013. 7. 3.	2013 - 2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 북구 신명동 268-3번지 인접 공유수면	2.42㎡	2013.7.1. ~ 2013.8.31.	이동식 화장실 설치	조건부 허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3길 42-1(명촌동)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7.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증정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68 3-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 42-1(명촌동)	2013-07-08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11B 13L	울산광역시 북구 고현로 108(명촌동)	2013-07-08	고현 북성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96, 494-8, 494-23, 495-1, 495-3, 495-5, 502-10, 506-1, 507, 508, 509, 511-2, 511-4, 1341, 1341-8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42(연암동)	2013-07-08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지번추가
4	울산광역시 북구 효계동 687-9	울산광역시 북구 효계5길 5-9(효계동)	2013-07-08	효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68 13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5길 5-1(명촌동)	2013-07-08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94-8	울산광역시 북구 축전로 4(효문동)	2013-07-08	기존 자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정정
7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32-43, 79-1	울산광역시 북구 중원지1길 12(창평동)	2013-07-08	기존 자연마을인 중원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지번정정
8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동 1452-2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47(화동동)	2013-07-08	화동은 화봉의 옛지명이며 산세가 깎절이 높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1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6-6외 6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7.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6-6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119	2013-07-08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괴정1길 13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298, 795-117	2013-07-08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1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82-1	2013-07-08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48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41, 795-273	2013-07-08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07-16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74	2013-07-08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4-21	2013-07-08	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36-1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5-8	2013-07-08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6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3.23 시행) 취지에 따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9.30 시행) 취지에 따라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 기술을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인터넷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 조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국가정보화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09.10)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상황에 맞게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안 제3조)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제출처

-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나. 전화번호 : 052-241-7241, 팩스번호 : 052-241-7249

6. 기 타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 제5조는 삭제한다.

제5조는 제4조로 하고,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 (제14조제4항 관련)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현행과 같음)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소요시간 / 전체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신 선> <신 실> <신 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 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부,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 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 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p>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p>	<p><삭제></p>

<p>과 이용 활성화</p> <p>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p> <p>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p> <p>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p> <p>9. 재원의 조달 및 운용</p> <p>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삭제></p>
--	--

<p>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p> <p>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p> <p>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학계·인문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p> <p>3. 구 관계 공무원</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p> <p>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정보화책임관)</p> <p>① ~ ③ (생략)</p>	<p><삭제></p> <p>제5조(정보화책임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	--

<p>④ (생 략) 1. ~ 8. (생 략)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 ③ (생 략)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② (생 략)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② (생 략)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③ (생 략)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 ② (생 략) ③ 구 지정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⑤ (생 략) 제16조(정보문화의 장날) ① ~ ③ (생 략)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③ (생 략)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생 략) 제19조(정보보호) ① ~ ② (생 략)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p>	<p>④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3조제3항----- -----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문화의 장날)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 ----- 시행계획----- ----. ② -----</p>
---	--

<p>라 위촉된 <u>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u>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p> <p>④ (생략)</p>	<p>-----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은 해촉된다.</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 (제11조제3항 관련)</p>	<p>[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 (제11조제3항 관련)</p> <p>(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산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임차 기계 사용료</td> <td>위당 금액 ×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td> </tr> <tr> <td>구매가각 ÷ 5 ÷ 12 ×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td> </tr> <tr> <td>인건비</td> <td>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 ÷ 30 × 작업일수</td> </tr> <tr> <td>소모품비</td> <td>실제 비용</td> </tr> <tr> <td>제값비</td> <td>위 전체 금액의 10%</td> </tr> <tr> <td>여비, 기타</td> <td>실제 비용</td> </tr> </tbody> </table>		구분	산정기준	임차 기계 사용료	위당 금액 ×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매가각 ÷ 5 ÷ 12 ×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건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 ÷ 30 × 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값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구분	산정기준													
임차 기계 사용료	위당 금액 ×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매가각 ÷ 5 ÷ 12 ×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건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 ÷ 30 × 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값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 평균한 시간 4. 구매가각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 (제14조제4항 관련)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현행과 같음)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소요시간 / 전체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중 “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제6호는 삭제하고, 제5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의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한다.”를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의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정보화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를 “관리부서”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부서”를 “관리부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제공한다.”를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의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9조의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정보화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를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호는 제12조로 한다.

제12조는 제13조로 한다.

제13조는 삭제한다.

제14조의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하며”를 “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이란 ----- ----- ----- 2. -----이란 ----- ----- ----- 3. -----란 ----- ----- ----- 4. -----이란 ----- ----- ----- 5.“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신 실> 5.“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전자우편 ID”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6.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삭 제>
<신 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6. (생략)</p> <p>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한다.</p> <p>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p> <p>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삼임)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며, 정보제공시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p> <p>----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p> <p>④ -----</p> <p>-----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p> <p>-----.</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 -----</p> <p>-----.</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 -----</p> <p>-----.</p> <p>② ----- (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p> <p>-----</p> <p>-----.</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 -----</p> <p>-----</p> <p>-----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부서 -----</p> <p>-----</p> <p>---- 각 호-----</p> <p>-----</p>
---	---

<p>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 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할 이유를 풍지한다.</p>	<p>----- -----</p>
<p>1. ~ 9. (생 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신 설></p>	<p>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p>
<p>제9조(시스템 안전대책)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신 설></p>	<p>제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 운영부 -----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신 설> <신 설></p>	<p>제10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p>	<p>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p>
<p>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 ② (생 략)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생 략)</p>	<p>제12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현행과</p>

<p>제13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u>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한다.</u></p> <p>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u>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신 선></p>	<p>감음)</p> <p><삭제></p> <p>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 ----- 할 수 있으며, ----- -----.</p> <p>② <u>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	---